|  |  |  |
| --- | --- | --- |
| **국가외환관리국**  **《외채등기 관리방법》배포에 관한 통지**  회발[2013]19호  국가외환관리국 각성, 자치구, 직할시 분국, 외환관리부, 선전, 다롄, 칭다오, 샤먼, 닝보시분국, 각 중국계 외환 지정 은행:  외환관리체제 개혁을 심층화하고, 행정허가절차를 간소화하며, 외채 집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외채위험을 방비할 목적으로 국가외환관리국은 외채등기관리방식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국가외환관리국은 <외채등기관리방법>과 <외채등기관리작업안내>를 제정하는바, 그대로 준행해야 한다.  동 통지는 2013년 5월 13일부터 실시한다. 전 규정과 동 통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동 통지를 기준으로 한다. 동 통지 실시 후 3건의 첨부법규는 즉시 폐지한다.  국가외환관리국 각 분국, 외환관리부는 동 통지를 받은 후, 즉시 관할 내 중심지국, 지국, 도시 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 외자은행, 농촌합작은행에 전달해야 한다. 각 중국계 은행은 동 통지를 받은 즉시 관할 내 각 분지기구에 전달해야 한다. 실시과정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국가 외환관리국 자본 프로젝트 관리사에 문의한다.  첨부파일:  1. 외채등기관리방법  2. 외채등기관리작업안내(생략)  3. 폐지되는 법규목록(생략)  국가외환관리국  2013년 4월 28일  첨부파일1: 첨부파일 1-3  <http://www.safe.gov.cn/resources/image/998849004f78fcab8d41dfaab946bc13/1367486648133.pdf?MOD=AJPERES&name=附件1-3>.    첨부파일 1：  **외채등기관리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정확, 신속, 완벽한 외채정보 통계를 위해 외채 자금유출입 관리를 규범화하여 외채 위험을 방비할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외채관리 조례>(이하‘외채관리조례’)와 <외채통계감독잠행규정>에 근거하여 동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채무자는 국가유관규정에 따라 외채를 차용하고, 외채등기를 진행한다.  **제3조** 국가외환관리국 및 그 분지국 (이하‘외환국’)은 외채의 등기, 계좌, 사용, 상환 및 인민폐로의환전(结售汇)등 관리, 감독 및 조사를 책임지고 외채에 대한 통계 및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은 전 구경(口径)외채의 통계감독을 책임지며, 정기적으로 외채상황을 공포한다.  **제4조** 국가외환관리국은 국제통계기준에 따라 중국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외채통계범위와 통계방법을 확정한다.  외채통계방법에는 채무자등기와 표본조사 등 이 포함된다.  **제5조** 국가외환관리국은 국제수지변화에 따라 외채등기범위 및 관리방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제2장 외채등기**  **제6조** 외채등기는 채무자가 규정에 따라 외채 차용 후, 규정방식에 따라 소재지 외환국에 등기 또는 외채의 체결, 인출, 상환과 환전 등의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것을 가리킨다. 채무자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외채등기 방식을 적용한다.  외채차관계약이 변경될 경우, 채무자는 규정에 따라 외환국에서 외채계약변경 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외채 미상환액(未偿余额)이 0이고, 채무자가 더 이상 인출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외환국에 가서 등기말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7조** 채무자가 정부부문일 경우, 매 월초 10일 영업일 내에 소재지 외환국에 외채 계약, 인출, 결제, 외환매입, 상환과 계좌변동 등의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제 8조** 채무자가 경내은행일 경우, 외환국의 관련 시스템을 통해 그 차용외채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제 9조** 채무자가 재정부문, 은행 이외의 기타 경내 채무자(이하 ‘비은행채무자’)인 경우, 반드시 규정된 시간 내에 소재지 외환국에서 외채계약 등기 또는 비안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0조** 경내은행을 거치지 않은 자금 수불(收付)처리에 대해 비은행채무자는 외채 인출액, 원리상환액과 미상환액이 변동 될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지참하여 소재지 외환국에서 비안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3장 외채계좌, 자금 사용과 환전관리**  **제 11조** 경내은행에서 외채를 차용한 경우, 경내외 은행에서 관련 계좌의 개설이 가능하며, 직접 그 외채 관련 인출과 상황 등의 수속 처리가 가능하다.  **제 12조** 비은행 채무자는 외채계약 등기 처리 후, 직접 경내은행에서 외채계좌의 개설을 신청할 수 있다.  비은행채무자는 인출과 상환 처리에 사용할 외채 전용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외채상환 원리금지급 전용계좌를 개설 할 수 있다.  **제 13조** 비은행채무자 신청에 근거하여 은행은 필요한 심의 절차를 이행 한 후, 직접 외채계좌의 신청, 해지 및 외채 인출, 환전 및 상환 등 수속의 처리가 가능하다.  **제 14조** 외상투자기업이 차용한 외채자금은 인민폐로 환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도의 규정 외에, 경내 금융기구와 중국계기업이 차용한 외채자금은 인민폐로 환전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 15조** 채무자는 외채자금의 인민폐로 환전 시, 실수요원칙에 따라 규정한 증명 문건을 지참하여 직접 은행에 가서 처리해야 한다.  은행은 반드시 유관 규정에 따라 증명 문건을 심의한 후, 채무자가 환전 수속을 밟도록 해야 한다.  **제 16조** 채무자가 대출계약서에 약정한 외채자금의 용도는 반드시 외환관리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단기외채는 원칙 상 유동자금으로만 사용되며, 고정자산 투자 등 중장기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 17조** 채무자는 외화를 매입하여 외채 상환 시, 반드시 실수요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은행은 반드시 유관 규정에 따라 증명문서를 심의한 후, 채무자의 외화매입송금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 4장 경외담보 경내차입(外保内贷) 외환관리**  **제 18조** 규정에 부합하는 채무자가 경내금융기구에서 차입한 경우, 경외기구 또는 개인이 제공한 담보(이하 ‘경외담보 경외대출’)를 받을 수 있다. 경내 채권자는 반드시 유관 규정에 따라 소재지 외환국에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경외 담보를 이행해야 할 경우, 채무자는 소재지 외환국에서 외채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제 19조** 외상투자기업이 경외담보로 경내차입을 할 경우, 직접 경외 보증인, 채권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경외 담보를 이행해야 할 경우, 그 담보 이행액은 반드시 외상투자기업 외채 범위관리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20조** 중국계기업이 경외담보로 경내차입을 할 경우, 사전에 소재지 외환국에 경외담보∙경내차입을 신청해야 한다.  중국계기업은 외환국에서 심사한 한도액 내에서 직접 보증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5장 대외양도 불량자산 외환관리**  **제21조** 경내기구는 불량자산을 대외양도할 경우, 반드시 규정에 따라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불량자산의 대외양도 비준을 받은 후, 경외투자자 또는 그 대리인은 외환국에 가서 불량자산 대외양도 비안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3조** 불량자산을 양수 받는 경외투자자 또는 그 대리인이 청수(清收), 재양도 등 방식으로 얻은 수익은 외환국 비준 통과 후 송금이 가능하다.  **제 6장 처 벌**  **제 24조** 외채자금의 불법 환전은 <외환관리조례> 제 41조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 25조** 독단적으로 대외에서 차입 또는 경외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등 외채관리행위를 위반한 경우, <외환관리조례> 제 43조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 26조** 규정을 위반하고 독단적으로 외채 또는 외채 환결제자금의 용도를 변동한될 경우, <외환관리조례> 제 44조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 27조** 아래 열거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외환관리조례> 제 48조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1) 규정에 따라 외채 국제수지와 연관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규정에 따라 외채통계 보고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규정에 따라 외채업무의 유효한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문서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4) 외채 계자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외채등기 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 28조** 금융기구가 아래 열거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외환관리조례> 제 47조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1) 외채자금 수불(收付)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  (2) 외채 항목 하의 환전, 외환매도업무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  **제 29조** 기타 동 방법을 위반한 행위는 <외환관리조례> 법률적 책임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7장 부 칙**  **제 30조** 은행은 외환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비은행채무자의 외채 계좌, 인출, 사용, 상환 및 환전 등 정보를 외환국에 보고한다.  **제 31조** 외환국은 표본조사 등 방식으로 경내기업의 대외무역 과정 중 발생한 선수금, 건납 등 기업간 무역 대출 정보를 수집한다. 경내기업과 경외기업간에 발생한 무역 대출은 동 방법의 규정에 따라 외채등기 처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  **제 32조** 채무자는 유관 규정에 따라 고정외채 원리금지급 리스크를 목적으로 환율 또는 이율관련 원금보장 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직접 은행에 가서 처리할 수 있다.  **제 33조** 동 방법은 국가외환관리국이 해석을 책임진다.  **제 34조** 동 방법은 2013 년 5 월 13 일부터 실시한다. |  | **国家外汇管理局**  **关于发布《外债登记管理办法》的通知**  汇发[2013]19号  国家外汇管理局各省、自治区、直辖市分局、外汇管理部，深圳、大连、青岛、厦门、宁波市分局，各中资外汇指定银行：  为深化外汇管理体制改革，简化行政审批程序，强化外债统计监测，防范外债风险，国家外汇管理局决定改进外债登记管理方式。为此，国家外汇管理局制定了《外债登记管理办法》和《外债登记管理操作指引》，现印发给你们，请遵照执行。  本通知自2013年5月13日起实施。之前规定与本通知内容不一致的，以本通知为准。本通知实施后，附件3所列法规即行废止。  国家外汇管理局各分局、外汇管理部接到本通知后，应及时转发辖内中心支局、支局、城市商业银行、农村商业银行、外资银行、农村合作银行；各中资银行接到通知后，应及时转发所辖各分支机构。执行中如遇问题，请及时向国家外汇管理局资本项目管理司反馈。  附件：  1.外债登记管理办法  2.外债登记管理操作指引  3.废止法规目录  国家外汇管理局  2013年4月28日  附件1: 附件1-3  <http://www.safe.gov.cn/resources/image/998849004f78fcab8d41dfaab946bc13/1369115350063.pdf?MOD=AJPERES&name=%E9%99%84%E4%BB%B61-3.pdf>    附件 1：  **外债登记管理办法**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准确、及时、完整统计外债信息，规范外债资金流出入的管理，防范外债风险，根据《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 条例》（以下简称《外汇管理条例》）和《外债统计监测暂行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债务人应按照国家有关规定借用外债，并办理外债登记。  **第三条** 国家外汇管理局及其分支局（以下简称外汇局）负责外债的登记、账户、使用、偿还以及结售汇等管理、监督和检 查，并对外债进行统计和监测。  国家外汇管理局负责全口径外债的统计监测，并定期公布外债情况。  **第四条** 国家外汇管理局根据国际统计标准，结合我国实际情况，确定外债统计范围和统计方法。  外债统计方法包括债务人登记和抽样调查等。  **第五条** 国家外汇管理局可根据国际收支变化情况，对外债登记范围和管理方式进行调整。  **第二章 外债登记**  **第六条** 外债登记是指债务人按规定借用外债后，应按照规定方式向所在地外汇局登记或报送外债的签约、提款、偿还和结 售汇等信息。根据债务人类型实行不同的外债登记方式。  外债借款合同发生变更时，债务人应按照规定到外汇局办理外债签约变更登记。  外债未偿余额为零且债务人不再发生提款时，债务人应按照规定到外汇局办理外债注销登记手续。  **第七条** 债务人为财政部门，应在每月初10个工作日内逐笔向所在地外汇局报送外债的签约、提款、结汇、购汇、偿还和 账户变动等信息。  **第八条** 债务人为境内银行，应通过外汇局相关系统逐笔报送其借用外债信息。  **第九条** 债务人为财政部门、银行以外的其他境内债务人（以下简称非银行债务人），应在规定时间内到所在地外汇局办理 外债签约逐笔登记或备案手续。  **第十条** 对于不通过境内银行办理资金收付的，非银行债务人在发生外债提款额、还本付息额和未偿余额变动后，持相关证明材料到所在地外汇局办理备案手续。  **第三章 外债账户、资金使用和结售汇管理**  **第十一条** 境内银行借用外债，可直接在境内、外银行开立相关账户，直接办理与其外债相关的提款和偿还等手续。  **第十二条** 非银行债务人在办理外债签约登记后，可直接向境内银行申请开立外债账户。  非银行债务人可开立用于办理提款和还款的外债专用账户， 也可根据实际需要开立专门用于外债还款的还本付息专用账户。  **第十三条** 根据非银行债务人申请，银行在履行必要的审核程序后，可直接为其开立、关闭外债账户以及办理外债提款、结 售汇和偿还等手续。  **第十四条** 外商投资企业借用的外债资金可以结汇使用。  除另有规定外，境内金融机构和中资企业借用的外债资金不得结汇使用。  **第十五条** 债务人在办理外债资金结汇时，应遵循实需原则，持规定的证明文件直接到银行办理。  银行应按照有关规定审核证明文件后，为债务人办理结汇手续。  **第十六条** 债务人借款合同中约定的外债资金用途应当符合外汇管理规定。  短期外债原则上只能用于流动资金，不得用于固定资产投资等中长期用途。  **第十七条** 债务人购汇偿还外债，应遵循实需原则。  银行应按照有关规定审核证明文件后，为债务人办理购付汇手续。  **第四章 外保内贷外汇管理**  **第十八条** 符合规定的债务人向境内金融机构借款时，可以接受境外机构或个人提供的担保（以下简称外保内贷）。 境内债权人应按相关规定向所在地外汇局报送相关数据。发生境外担保履约的，债务人应到所在地外汇局办理外债登记。  **第十九条** 外商投资企业办理境内借款接受境外担保的，可直接与境外担保人、债权人签订担保合同。  发生境外担保履约的，其担保履约额应纳入外商投资企业外债规模管理。  **第二十条** 中资企业办理境内借款接受境外担保的，应事前向所在地外汇局申请外保内贷额度。  中资企业可在外汇局核定的额度内直接签订担保合同。  **第五章 对外转让不良资产外汇管理**  **第二十一条** 境内机构对外转让不良资产，应按规定获得批准。  **第二十二条** 对外转让不良资产获得批准后，境外投资者或其代理人应到外汇局办理对外转让不良资产备案手续。  **第二十三条** 受让不良资产的境外投资者或其代理人通过清收、再转让等方式取得的收益，经外汇局核准后可汇出。  **第六章 罚 则**  **第二十四条** 外债资金非法结汇的，依照《外汇管理条例》 第四十一条进行处罚。  **第二十五条** 有擅自对外借款或在境外发行债券等违反外债管理行为的，依照《外汇管理条例》第四十三条进行处罚。  **第二十六条** 违反规定，擅自改变外债或外债结汇资金用途的，依照《外汇管理条例》第四十四条进行处罚。  **第二十七条** 有下列情形之一的，依照《外汇管理条例》 第四十八条进行处罚：  （一）未按照规定进行涉及外债国际收支申报的；  （二）未按照规定报送外债统计报表等资料的；  （三）未按照规定提交外债业务有效单证或者提交的单证不真实的；  （四）违反外债账户管理规定的；  （五）违反外债登记管理规定的。  **第二十八条** 金融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依照《外汇管理 条例》第四十七条进行处罚：  （一）违反规定办理外债资金收付的；  （二）违反规定办理外债项下结汇、售汇业务的。  **第二十九条** 其他违反本办法的行为，按《外汇管理条例》法律责任有关规定进行处罚。  **第七章 附 则**  **第三十条** 银行应按照外汇管理相关规定，将非银行债务人的外债账户、提款、使用、偿还及结售汇等信息报送外汇局。  **第三十一条** 外汇局利用抽样调查等方式，采集境内企业对外贸易中产生的预收货款、延期付款等企业间贸易信贷信息。 境内企业与境外企业间发生贸易信贷的，无需按照本办法规定办理外债登记。  **第三十二条** 债务人可按照有关规定签订以锁定外债还本 付息风险为目的、与汇率或利率相关的保值交易合同，并直接到银行办理交割。  **第三十三条** 本办法由国家外汇管理局负责解释。  **第三十四条** 本办法自 2013 年 5 月 13 日起实施。 |